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평생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721호, 2026.6.2. 공포, 2026. 1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평생교육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이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9제2호타목)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7조의2 및 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OOOO. OO. OO. ~ OO. OO.)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2. 개별기준

타. 법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	100	200	3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382